

#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 기 대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자유한국당 비례 출신 이 성 배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장애인이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또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에서도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 해임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에 대한 수정과 어색한 문구를 일부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○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